

최근 BT 특허 이슈

조영균

특허청 화학생명공학심사국 생명공학과

TEL: 042-481-8132; FAX: 042-472-3541

Abstract

생명공학분야의 급속한 발전에 따라 새로운 개념의 기술이 출현하고 있고 이와 관련된 특허출원이 급증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생명공학분야의 연구결과물을 효과적으로 보호할 기준을 만들고 재정비하는 작업이 요구된다. 특허청에서는 1998년 3월에 「유전공학관련 발명」, 「미생물관련 발명」, 「식물관련 발명」 및 「동물관련 발명」에 관하여 체계적이고 일관성 있는 「생명공학분야 심사기준」을 제정하였다. 2000년 12월 1차 개정에서는 human genome project의 산물인 DNA 단편 (EST 등), SNP 등에 대한 심사기준을 마련하였으며, 2003년 12월 2차 개정에서는 유전자 및 단백질의 변이체에 대한 청구범위 기재요건을 강화하였고, DNA단편, 모노클로날 항체, 융합단백질 및 안티센스와 관련된 진보성 판단 기준을 마련하였다. 또한 2004년 1월에 제정된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이 2005년 1월부터 시행됨에 따라 생명공학분야 발명의 생명윤리 및 안전에 대한 판단기준을 반영하여 2005년 5월 제3차 개정을 추진하였다. 그 내용은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정부의 공식 승인을 받은 연구 성과물에 대한 발명을 특허등록 대상으로 하는 한편, 동법에서 금지하는 행위 또는 연구 성과물에 대한 발명은 특허법 제32조의 규정에 의거 특허를 받을 수 없는 발명으로 하였다. 새롭게 특허대상으로 편입된 신기술에 대한 심사기준을 확립하고, 급속한 기술진보로 인하여 변화가 요구되는 기 확립된 심사기준을 개정하기 위하여 앞으로도 많은 연구가 필요하며, 또한 심사결과에 있어서 국제적인 조화를 위하여 선진국과의 체계적인 의견 교환도 필요할 것으로 예상된다.

Reference

1. Lee, CY, "Biopatenting Strategies", Daekwang Books, Seoul, 2003